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1. 27 선고 2021가단10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 론 종 결 2021. 12. 23.

판 결 선 고 2022. 1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, 2010. 12. 31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H리'만 표시)에 관하여, I은 1966. 11. 2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I은 1971. 4. 2. 사망하였고, 상속인은 처 B, 아들(호주 상속인) C, 아들 D, 아들 G, 딸 E, 딸 F이며, 상속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피고들 상속 지분 표시와 같다.

나. J은 2001. 12. 24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고(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카단2330),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. J은 2008. 12. 21. 사망하였다. J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, 원고가 부동산을 관리하고, J 명의로 부과된 각 부동산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(199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J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고, 현황에 1966. 2. 15. 취득일자로 기재되어 있다).

다. K 전 2790㎡ 지상에 분묘 3기[원고의 조부 L(1964. 11. 11. 사망), 조모 M(1924년경 사망), 조모 N(1977. 5. 30. 사망)]가 있고, 나머지 부분을 밭으로 경작 중이다. O 임야 949㎡ 지상에, 분묘 2기[원고의 큰 아버지 P(1997. 2. 10. 사망), Q(미상)]가 있어 원고가 관리하고,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2기가 있으며, 원고가 감나무,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.

라. 원고는 R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, R는 30년 이상 각 토지 중 분묘 외 부분에서 고추 농사, 콩 농사 등을 짓고 있다.

[인정근거] 피고 E: 갑 제 1 내지 1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R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외 나머지 피고들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)

2. 판단

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, 전

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8496, 8502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각 토지 지상 분묘 설치 및 관리 현황, R의 경작,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고려하면, 원고는 원고가 점유개시 시점으로 특정한 1990년 12월 말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,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원고는 1990년 12월 말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. 12. 3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0. 12. 3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현진

별지